

수원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가단52218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 B의 파산관재인 변호
사 C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담당변호사 김지수, 김현원)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피고 A,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배당금채권
9,354,375원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함)은 소외 A, B(각 소취하전 공동피고)의 보증의뢰에 따라, A, 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F’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은행
2020.6.15.	9,000만원	2021.6.14.	중소기업자금대출	2020. 6. 16.	1억원	중소기업은행

나. 중소기업은행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20. 6. 16. A에게 중소기업자금대출 과목으로 1억원을 대출하였는데, A, B은 2020. 10. 28.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21. 1. 19. 이자연체로 최종 부실처리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1. 3. 25.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연체 대출원리금 90,772,997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한편, A, B은 위 F의 동업자인 G과 함께 2020. 7. 20.부터 2020. 7. 28.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에 관한 담보로 자신들이 1/2 지분씩 공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2020. 7. 20.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2020. 7. 20. 접수 제33385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A, B,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라. 이에 보조참가인은 2012.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A은 수원지방법원 2021하단1972호로, B은 수원지방법원 2021하단2044호로 각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2021. 11. 30. 각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파산자 A,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에 따라 보조참가인을 수계한 후 채무자회생법 소정의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대상 행위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이 A, B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달리 적극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A, B은 2020.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6,7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4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던 점, ③ A, B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1억원의 위 보증서에 기한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어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점, ④ A,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2021. 8. 30. 및 2021. 9. 13.)에 각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앞서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A, B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피고는, A, B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동업자인 A, B 및 G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것인데, A, B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원을 융통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7다264072, 26408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다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A, B은 피고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위 금원 차용 및 담보제공이 A, B이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A, B의 위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고,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선의 주장

가) 또한 피고는, 자신은 A, B의 채무내역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대하구매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것이 A,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다 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위 채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0. 4. 28.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A, 채권최고액 4,440만원)가 1순위로 경료되어 있었는데, 중소기업은행은 2021. 5. 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인천지방법원 E), 위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21. 1. 21. 경락대금을 50,122,000원으로 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그후 매각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경매법원은 2022. 3. 16.을 위 경락대금의 배당기일로 지정하고, 경락대금의 배당을 위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표에 의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48,285,067원(경락대금 50,122,000원 + 이자 4,415원 - 집행비용 1,841,348원)이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교부권자(당해세)로서 1순위로 98,780원 전액을 배당받고, 중소기업은행은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38,831,912원 전액을 배당받으며,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나머지 9,354,375원을 배당받는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후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인천지방법원 2022가단3355)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피고의 위 배당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부인하고¹⁾,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채권 9,354,375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H

I빌라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K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32.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H 대 149㎡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5분의 1

(이상 A, B 각 2분의 1지분씩 공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표시

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7월 20일

접수 제333857호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

우구순위번호 제16번 근저당권자 D

1) 원고는 청구취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도 부인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부인의 대상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등기를 부인한다는 부분은 무의적인 기재사항으로 보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